

외국인 주민 여러분께

주민세(시현민세)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하마다시청 세무과

주민세 【1월 1일에 하마다시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하마다시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는, 4회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각각 하기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6 월 30 일	8 월 31 일	10 월 31 일	1 월 31 일

독촉장은,

하마다시가 주민세를 미납하신 분께 발송합니다.

만약, 아직 미납하신 경우에는,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납부하였는데 독촉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연락처

하마다시청 세무과 수납계

전화 : 0 8 5 5 - 2 5 - 9 2 4 0